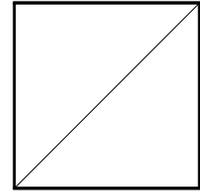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5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의  
결  
사  
항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일)의 일환으로 행해진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하향' 조치를 연장하고자 함

\* '규제유연화 방안'중 하나로 예대율 산정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한시적 하향조정 포함

## 3. 주요내용

'21년 상반기 중 신규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까지 예대율 가중치를 하향조정(100%→85%)

\* 현행 : '20년중 신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하향조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0.12.2.~2020.1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 - 호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중”을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

## 부 칙

부칙 제1조(유효기간 등) 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출”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2020년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

-. --,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

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 가. ~ 라. (생략) 4.·5. (생략) ② ~ ⑤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연락처	02-2100-2824	02-3145-8052